

□ 양도소득세 부과제척기간 연혁(국기법 §26의2)

- 양도소득세 부과제척기간의 기산일 : 확정신고기한(양도일이 속하는 연도의 다음 연도 5.31.)의 다음날(6.1.)

구 분	'93.12.31.까지 양도	'94.1.1.이후 양도
사기나 그 밖의 부정한 행위로 국세 포탈	5년	10년
무신고		7년
그 외(일반과소신고)		5년

※ 부과제척기간이 경과하면 정부의 부과권은 소멸되어 경정·결정 불가

※ 예외 : 불복청구에 따른 결정일 또는 판결확정일, 조세조약에 따른 상호합의 종료일, 과세표준·세액의 계산근거가 된 거래·행위 등이 소송에 대한 판결로 변경되는 경우 판결확정일로부터 1년까지는 경정결정 가능(2017.1.1.부터 결정 또는 판결의 대상이 된 과세기간과 연동된 다른 과세기간도 적용)

※ 부담부증여시 양도소득세 부과제척기간 연장 : 일반 5년 → 10년 / 무신고·거짓 신고·누락신고·부정행위 7 or 10년 → 15년

※ 경정청구일부 2개월까지 부과제척기간 연장(부과제척기간 임박한 경정청구 보완. 2017.1.1.부터 적용)
- 경정청구, 조정권고의 대상이 된 과세기간과 연동된 다른 과세기간분 포함('18.1.1.부터 적용)

□ 사기나 그 밖의 부정한 행위(국기법 §26의2, 국기령 §12의2, 조세범처벌법 §3⑥)

- “사기나 그 밖의 부정한 행위”란 다음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로서 조세의 부과와 징수를 불가능하게 하거나 현저히 곤란하게 하는 적극적 행위를 말하는 것임

1. 이중장부의 작성 등 장부의 거짓 기장
2. 거짓 증빙 또는 거짓 문서의 작성 및 수취
3. 장부와 기록의 파기
4. 재산의 은닉, 소득·수익·행위·거래의 조작 또는 은폐
5. 고의적으로 장부를 작성하지 아니하거나 비치하지 아니하는 행위 또는 계산서, 세금계산서 또는 계산서합계표, 세금계산서합계표의 조작
6. 「조세특례제한법」 제5조의2제1호에 따른 전사적 기업자원관리설비의 조작 또는 전자세금계산서의 조작
7. 그 밖에 위계(僞計)에 따른 행위 또는 부정한 행위